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92
------------	-------

제출년월일 : 2016.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사항 신설
-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나. 위원의 위촉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개정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신설 (안 제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변경
-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신설
-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신설

- 라.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규정 삭제(안 제5조)
- 마.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및 신설(안 제11조)
- 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원공사를 신설(안 제12조)
- 사.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표기 조정(안 제5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16조제5항, 제3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제2항, 제106조2, 제10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6. 9. 1. ~ 9. 21.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평가 : 원안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6.10.11)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로, “중에 있는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를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가”를 “구가”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쟁입찰에 있어서”를 “입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을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10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8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부의하여야”를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을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로, “부의”를 “회의 안건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위원을”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이상 10억원 이하”를 “이상”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제13조제1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친 안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신규위촉된 것으로 보며,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중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중인 사람
2. ----- 사람으로서 -----
-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신 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 따른 -----

<삭 제>

6.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 산
무-----

----- .

② ----- 위촉위원-----

한 차례만 연임--.

----- 남은

임기----- .

③ -----

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5. (생략)

<신설>

----- 계약업무 담당주사 -----.

제4조(기능) ① ----- 구가 -----

----- 각호---
-----.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입찰에서 -----

2.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②(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각 호----- -----.

1. 제1항에서 심의대상-----

2. 그 밖의 -----
----- 회의에 부치는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심의 -----

-----.

<삭 제>

제6조(소위원회) ① -----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 ⑦ (생략)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

----- 영 제107조에 따라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 회의에 부치는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각 1명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제7조에 따라 -----

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

② -----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 회의 안건을 -----

-----.

----- 해당 -----

-----.

③ ----- 제2항에 따른 -----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

-----.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

-----.

제11조(위원의 해촉) -----

-- 각 호의 -----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영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단,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

-----이상-----
-----제외한
다-----

<p>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u>당해</u>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p>	<p>----- 해 당 -----. -----.</p>
<p>1. ~ 9. (생략)</p>	<p>1. ~ 9.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u>10. 공원 공사</u></p>
<p><u>10. (생략)</u></p>	<p><u>11. (현행 제10호와 같음)</u></p>
<p>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u>부의안건</u>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 ----- 회의에 부친 안건-----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u>계약심의위원회</u> 관련 위원장 및 계약 담당자, <u>관계공무원</u>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u>범위에서</u> ----- -----.</p>
<p>② <u>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u>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 <u>범위에서</u> ----- -----.</p>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u>시행</u> 에 -----. -----.
--	---